



자택방문 동의서

이 동의서는 부모, 가디언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입학생을 위해 작성하거나 성인학생이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은,(부모 이름), (하나를 체크) (학생 이름)부모, 가디언, 후견인으로써 **또는** 성인 학생은 방문자(Lea 이름)가 본인의 DC 특구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에 동의 합니다. 방문에 의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학생의 공식문서로 보관하며 학교, 현지교육위원회나 특구 교육위원회 외부로 이전되거나 통보되지 않습니다. 법이나 특구 거주 사실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 입니다. 이 정보는 학생의 부모, 가디언, 후견인 또는 성인 학생의 DC 특구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택 방문에 동의 하십니까? 네 아니오

자택방문에 동의 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으로 워싱턴 특구 거주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모/보호자/후견인/성인 학생의 집 주소

도로명:

도시: 주: 우편 번호: 전화 번호:

자택 방문 동의자의 서명

날짜

학교장의 서명

날짜

위증죄에 대한 처벌사항:

콜롬비아 교육구의 공립학교나 특수학교 직원을 포함한 누구든지 학생의 거주 증빙서류와 관련된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는 수업료의 배상, 2000 불 이하의 벌금이나 90 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나 벌금과 구류가 동시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DC 교육구 비거주자 수업료 납부 법안에 의거하며 1960 년 9 월 8 일 제정되고 2012 년 콜롬비아 교육구 공립학교와 특수학교 학생거주 위반방지 수정 법안에 따릅니다(DC 코드 38-312). 해당 사항 관련자의 경우에는 DC 교육구 교육위원회 법무실로 연락바랍니다.